

세종상공회의소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5층(소담동, 펠리체타워3)
044-863-3080 / ktkim2212@korcham.net / 회원사업부 / 주임 김근태

세종회 : 제 008 호

2020. 1. 29

수 신 : 관내기업 대표

참 조 : 인사담당 부서장

제 목 : '20년 『세종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안내

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의소는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세종지역 미취업 청년의 지역 기업 채용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제의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세종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인건비,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인건비)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60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기본교육(20시간), 심화교육(6시간) 내외

다. 신청자격

·기 업: 세종시 소재 본사(공장)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1개 기업 당 최대 2명 지원(기업당 기본 1명 지원 원칙)

·근로자: 만39세 이하 세종시 거주자(1개월 내 전입예정자 포함)

라. 기업신청기간 : 2020. 1. 29(수) ~ 2. 20(목)

마. 신청방법 : 제출서류(PDF파일 전환) E-메일 접수

·서식 다운로드: 세종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 '81번' 게시글

바. 기업 및 청년 선발

·기업 선정결과 발표 : 2.28(금) 예정

·청년 선발 : 선정된 기업은 채용기간 내 직접 청년을 채용하되,

기간 내 청년 선발이 어려운 경우 세종시, 세종상의 협조

* 일자리 매칭 데이 개최(3.25 예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사. 협약체결 및 교육

- 기업-청년-세종시-세종상의 4자 간 협약 체결 : 3.31(화) 예정
 - * 원칙적으로 계속 고용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계약 4.1(수)부터
- 참여청년 기본 교육(20시간) : 4.1(수)~4.3(금), 3일간, 세종상의
 - * 해당 기업에서는 참여청년의 교육 참여 허용 必
- 근로 시작 : 4.6(월)

아. 문의 및 접수처

- 참여조건,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회원사업부 주임 김근태(☎070-4163-2727)
- 접수처: sejongcci001@naver.com

- 붙임. 1. 사업공고문 1부
2. 자주 묻는 질문(FAQ). 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식



● (Q1) 지원가능한 기업은?

(A1) 지원가능한 기업은 세종시 소재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협회, 단체는 불가하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가능합니다.

● (Q2) 인건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본 사업을 통해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한하여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시, 2년간 월 160만원 상당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기업부담 20% 이상, 월 40만원 이상)

● (Q3)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A3) 채용조건은 기업과 청년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단, 본 사업은 청년-기업-세종시-세종상공회의소간 4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 (Q4)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기간 종료 후 지급되는 인센티브와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 (Q5) 4대보험과 퇴직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인건비 지급액(월 최대 160만원 이내)이외의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퇴직금, 연장·야간·가산·휴일근로 수당 등)

● (Q6) 교육참여는 필수인가요?

(A6) 네. 참여 기업에서는 참여 청년이 매년 20시간 이상의 기본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6시간 이상의 심화교육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셔야 합니다.